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3
----------	------

발의연월일 : 2024. 8. 7.

발 의 자 : 최보운 · 김승수 · 임이자  
김성원 · 김 건 · 엄태영  
윤영석 · 김선교 · 장동혁  
김은혜 · 안상훈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둠(안 제1조).
- 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사항을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 및 보장, 근로, 건강 및 재활,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43조까지).
- 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지원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
- 라.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안 44조).
- 마.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상담 및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

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

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 시설의 기능을 개편하고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을 사용함(안 제57조).

사.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8조).

아. 종전 법률의 장애인 학대 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2612호)으로 이관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26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나.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이 기본적인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②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의 연령, 성별, 인종 및 문화, 장애 유형, 장애정도 등의 개별적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④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장애인의 존엄성 유지에 부합하는 한에서는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성, 장애특성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과 전달체계를 마련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 장애아동, 중증장애인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 지원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복지의 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평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

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2장 장애인 복지 지원

제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교육비 지급)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

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이하 “자녀교육비”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그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만이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경우
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후 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

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17조(자금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18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자립훈련비 지급)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을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훈련비 지급을 대신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과 물건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건강보건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

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재활 상담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56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또는 장애인이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에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

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장애인보조기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 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보조기 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0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제27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제27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한 경우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교육)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

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30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

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⑧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6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제7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⑩ 제7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8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

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주택지원, 주거유지 지원 등 주거서비스,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과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9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장애동료간 상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해 또는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성 관련 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 자립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과 법정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지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퇴소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애인의 특성, 자립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임대료 지원 등 주택지원 방안
2. 주택개조, 주거급여, 주거유지 지원 등 주거서비스 제공 방안
3. 활동지원서비스, 건강 및 재활서비스 등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지원 방안 등
4. 자립정착금 지원, 이주 지원 등 초기 정착 지원 방안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거주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 퇴소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1.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체벌, 폭행, 학대, 유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거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경우 해당 기관

2.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관기준의 현저한 미달, 부적절한 기관운영 등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퇴소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전환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중앙 장애인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 내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 장애인의 퇴소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지역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장애인 가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상담 및 교육
2.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장애인 서비스 제공 절차

제44조(서비스의 신청) ①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제45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5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제49조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대상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등은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

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자료의 요청) ① 제45조제5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밀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정밀심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② 정밀심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

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밀심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심사기관의 자료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5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45조제2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에 대하여 신청 또는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퇴소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3. 제62조에 따른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 병무, 매장· 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

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이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9조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상담 및 정보제공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

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2조(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의 사례관리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51조에 의한 상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기간 및 제공자
2.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52조의 사례관리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람이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퇴소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2항의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을 포함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별지원계획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평가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수행기관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1조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7조에 의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장애인복지상담원) 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 ②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제57조(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 또는 개별법에 따른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35조의 인식개선교육기관
2. 제41조의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3. 제42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 제43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 기관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역보조기기센터
15.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

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57조에 따른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69조에 따른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위탁 조건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그 준비를 지원하는 기관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기관

3.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하려면 전문적 서비스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 제6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절차) ①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려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의 기관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 이용을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9조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용 신청자의 기관 이용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의 기관 이용 적격성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결정하여 이용 신청자와 기관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④ 기관 이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기관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적격성 여부를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기관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은 기관을 이용할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계약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⑦ 기관 이용자가 기관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기관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기관 운영자에게 밝혀야 한다.

⑧ 기관 이용자의 이용 중단 신청을 받은 기관 운영자는 이용 중단 신청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기관 운영자는 이용 중단 희망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2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5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기관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의 의무) ① 기관 운영자는 기관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기관 운영자는 기관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여야 한다.

③ 기관 운영자는 기관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관 운영자는 기관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에 기관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관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자는 그 기관을 이용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0조제7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 제63조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기관의 개선, 사업의 정지, 기관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77조에 따른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장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제69조(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0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

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 ②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 ③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

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③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기관·관련 학과·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5조(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 제70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71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대

여하였을 때

4.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제77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을 때

2. 언어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언어재활 대상자의 기능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을 때

3.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4.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제78조(수수료)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79조(비용 부담) ①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9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비용 수납)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제81조(한국언어재활사협회) ① 언어재활사는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①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4조(압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85조(조세감면)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77조에 따른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8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2. 제43조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3. 제4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4. 제67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5. 제76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제87조(이의신청) ①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88조(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9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45조제5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50조제1항·제5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장 벌칙

제90조(벌칙) ①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4.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제61조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7. 제63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4.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

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7. 제6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장애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상담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장애인 지원 사업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9조(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의 실시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제5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서비스제공기관 및 제69조에 따른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시설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시설로 본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1조(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및 그 양성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은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및 그 양성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562호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7년 2월 8일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6733호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9년 12월 3일 당시 종전의 제72조의3에 따라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2조의3에 따라 3급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6733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9년 12월 3일 당시 종전의 제72조의3에 따라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2조의3에 따라 2급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의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